

자동차검사대행자 지정서

1. 명칭:
2. 성명(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):
3. 주소(법인의 경우는 주사무소 소재지):
4. 검사소의 소재지:

위 사람을 「자동차관리법」 제44조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국토교통부장관

직인